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645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0. 18
- 나. 회 부 일 자 : 2000. 10. 19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0. 10. 28

고 성 군 수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사유

- 청소년 조직의 강화와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성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내용

- 가. 상담실 명칭 및 위치, 설치기준(안 제2조, 제3조)
- 나. 상담요원 등의 구성 및 자격과 임용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다. 상담요원 등의 신분보장, 복무, 면직, 징계규정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 라. 상담요원 등의 보수규정(안 제10조)
- 마. 상담실 운영방법 및 위탁운영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바.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사. 상담실의 상담방법 규정(안 제18조)
- 아. 상담요원 등의 경력산정 기준(안 제20조)
- 자. 기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준용규정(안 제21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에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1년도까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에서도 청소년 상담실 확대 설치계획에 의거 1999년까지 11개 시·군이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고성군을 비롯한 5개 군에서 설치·운영토록 국·도비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개군은 2001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계획이 시달되었으므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지방 청소년상담실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이 100㎡이상의 건물에 최소한 개인 면접 상담실 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심리검사실 1개소는 병행사용가능), 전화상담실 2개소, 상담대기실 1개소, 행정실 1개소 등 도합 6개의 사무실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시설설치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만약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시에는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
- 그리고 지방 청소년상담실 설치의 의무규정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행위임으로 현재 우리 군 청소년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임을 감안한다면 학교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2000년 말까지 정규직·일용직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데 반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를 70%까지 지원하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 답 :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를 일부 수선하여 활용하면 법적 설치기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 문 : 안 제5조 중 청소년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2인 이내의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 답 : 재정여건상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고 상담원 1명과 상담보조원 1명을 채용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임.
- 문 :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상담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가 상담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상담원 2명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여성의 상담은 여성이 맡아야 올바른 상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의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답 :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우수한 상담원을 채용하여 청소년 상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교육의 산실인 고성교육청과 청소년 전문가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하겠음.
- 문 : 안 제15조 중 운영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년 2회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비등 운영수당이 지급되고, 만약에 대학교수나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시 바쁜 일정관계와 실비보상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 알맹이 없는 회의가 진행될뿐 아니라 회의 참석 수당도 과다하게 지급될 것이므로 기존 조례에 명시된 청소년 위원회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 답 : 청소년위원회와 본 조례에 명시된 운영협의회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 통합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협의회를 구성할시 제반 사항을 검토해 보겠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0. 10.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